

긴급입찰 사유서

1. 용역 개요

가. 용역명 : 2027-2028년도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

나. 용역예산 : 금 1,884,000,000원(VAT 포함)

다. 용역기간 : 2027. 1. 1.~2028. 12. 31.

2.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

가. 법적근거 :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5조제4항제1의2호, 대통령령 제36318호, (시행 2026. 5. 12.)

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6. 22., 2020. 5. 1.>

1.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
 - 1의2.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
 2.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 3.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·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4.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
-

나. 긴급입찰 사유

- 본 사업은 「국가계약법 시행령」 제35조제5항4호에 따라 해양수산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안정적인 정보서비스 제공과 업무 연속성 확보가 요구되어 신속한 계약 체결이 필요함

다. 공고기간* : 15일

*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공고일까지